

#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689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8년 6월 17일  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인증심사와 관련한 전문적인 심사요건을 갖춘 기관에 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기관이 가져야 할 신뢰도와 전문성, 공신력 등과 관련하여 예시적인 기관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수정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은 서울시복지재단 또는 전문적인 심사 요건을 갖춘 기관에 인증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(안 제8조제1항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1항 중 “전문적인”을 “서울시복지재단 또는 전문적인”으로  
수정한다.

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수정안조문 대비표(안)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8조(인증심사)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서울시복지재단에 인증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인증심사)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<u>전문적인</u> 심사 요건을 갖춘 기관에 인증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인증심사) ①----- ----- ----- <u>서울시복지재단 또는 전문적인</u> 심사 요건을 갖춘 기관에 인증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.</p>